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185
----------	-------

발의연월일 : 2026. 6. 11.

발 의 자 : 양부남 · 이광희 · 정진욱
김문수 · 이강일 · 김동아
이훈기 · 전진숙 · 박민규
한민수 · 김남희 · 이상식
윤준병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 등 정보처리 기술이 급격히 고도화됨에 따라 타인의 얼굴, 음성, 영상 등을 정교하게 합성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정도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해졌음.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산업과 일상에 편의를 제공하지만 그 이면에는 기술을 악용한 신종 범죄가 증가하여 막대한 사회적 비용 지출 등의 각종 피해를 낳고 있음.

특히,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조작된 허위 영상이나 음성을 유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타고 순식간에 확산되어,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인격권 침해를 가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해당 범죄에서 정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3항 신설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의”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2항의”를 “제2항 또는 제3항의”로 한다.

③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은 범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0조(벌칙) ① · ② (생략)</p> <p><u><신 설></u></p> <p>③ <u>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u></p> <p>④ <u>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정한다.</u></p>	<p>제70조(벌칙)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u>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u></p> <p>④ <u>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u>----- ----- ----- -----.</p> <p>⑤ <u>제2항 또는 제3항의</u>----- ----- ----- -----.</p>